## 민워 및 신고 처리 규칙

제정 2010.6. 7.

개정 2012. 9. 14.

개정 2013. 8. 21.

개정 2016. 7. 21.

개정 2017. 8. 4.

개정 2018. 5. 24.

개정 2022. 12. 26.

개정 2023. 6. 5.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에 접수된 민원 및 신고(이하 "민원 등"이라 한다)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 7. 21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민원"이란 진흥원에 상담, 고충의 해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- 가. "상담민원"이란 민원인이 진흥원에 절차 및 형식요건 등에 관하여 질의·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나. "고충민원"이란 민원인이 진흥원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신고"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민원인"이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4. "신고인"이란 신고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5. "민원처리총괄부서"란 진흥원내 모든 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6. "민원처리부서"란 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등을 처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.
- 7. "피신청인"이란 민원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8. "민원처리시스템"이란 민원 관련 정보를 입력·조회·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구성한 DB 및 서버 등의 시스템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제3조(적용범위) 민원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, 진흥원의 정관 등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으로

## 제2장 민원 등의 처리 공통사항 <개정 2016. 7. 21>

## 제1절 민원 등의 처리원칙 및 처리담당자의 지정 <개정 2016. 7. 21>

- 제4조(처리의 원칙) ①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등은 진흥원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이첩하거나 이송할 수 있다.
  - 1. 접수된 민원 등의 내용이 진흥원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
  - 2. 관계 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민원인 및 신고인(이하 "민원인 등"이라 한다)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이첩·이송하는 경우에는 미리 민원인 등에게 그 사유와 이첩·이송되는 기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  - ③진흥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첩하는 경우에는 이첩받은 관계 기관 등이 그 처리 결과를 진흥원에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접수된 민원 등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신청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<개정 2013.8.21>
  - ⑤접수된 민원 등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그 내용이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<개정 201 3.8.21.>
  - ⑥접수된 민원 등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8조2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 신고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<개정 2023. 6. 5.>
  - ⑦진흥원 직원의 비리부정 등을 폭로하는 고발성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.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- 제5조(민원처리담당자의 지정)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 등의 처리 및 통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7. 21>
  - ②민원처리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실무처리방법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
- 제6조(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)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 등의 업무를 신속·공정·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7. 21>

제2절 민원 등의 신청 및 취하 <개정 2016. 7. 21>

- 제7조(민원 등의 신청) ①민원인이 상담민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도 할 수 있다.
  - ②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되,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도 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다.
  - ③제2항 단서의 "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민원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, 인터넷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민원인이 고령·질병·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④민원인의 성명·연락처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6. 7. 21.>
  - ⑤고충민원 처리 중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민원의 사실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 원을 상담으로 처리 할 수 있다.
  - ⑥민원처리부서는 서식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- ⑦신고인의 신고 신청에 관해서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제8조(민원 등의 신청 취하 등) 민원인 등이 민원 등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취하의사를 전화나 전 자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인 등의 취하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<개정 2016. 7. 21>

#### 제3절 민원 등의 처리기간 <개정 2016. 7. 21>

제9조(민원 등의 처리기간) ①상담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한다.

- 1. 민원인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단순한 절차 또는 형식 요건에 관하여 질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
- 2.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
- 3. 기타 질의는 7일 이내
- ②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.
- ③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.<개정 2018. 5. 24>
- ④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지체없이 민원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8.21>
- ⑤민워 등의 처리의 연장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 또는 피신

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- 제10조(처리기간의 산정) ①민원 등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접수일은 처리기간에 포함한다. ②민원 등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민원인 등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진흥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)
  - 2. 접수·경유·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
  - 3. 민원인 등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
  - 4. 의견 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
  - 5. 실험·검사·감정,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 가
  - 6.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
  - 7. 관계부처와의 협의기간(민원처리부서의 내부 조사가 완료되었으나, 미래창조과학부, 행정자치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처분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통보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)
  - 8. 공휴일 및 토요일 <개정 2012.9.14.>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## 제3장 민원의 처리

#### 제1절 상담민원의 처리

- 제11조(상담민원의 처리) ①상담민원의 경우 상담 접수 매체별로 처리하되, 처리 후 기록을 민원처리시스템에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민원처리담당자는 상담민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FAQ(자주 묻는 질문)나 보도자료 등 기존의 답변자료를 참조하여 처리한다.
  - ③민원처리담당자는 FAQ 등에 없는 상담민원의 경우에는 유관부서 민원처리담당자로부터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한다. 이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유관부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민원처리시스템의 아이디(ID)/패스워드(PW)를 부여하고 직접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④민원처리부서의 담당 팀장은 FAQ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절 고충민원의 처리

제12조(접수의 통보) ①민원처리담당자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 12. 26.>

-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민원의 내용이 단순히 피신청인의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에 그치는 경우<개정 2016. 7. 21.>
- 2. 민원의 접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경우
- 제13조(사실확인) ①민원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다.
  - 1.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의 진술청취
  - 2.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으로부터의 입증 자료 수집
  - 3.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
  - 4. 사진촬영, 기타 적정한 방법
  - 5.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
  - 6.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
  - ②민원처리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해당 민원과 관련한 문서, 관계물 품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검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사 대상의 선정 기준,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현장검사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사건의 분할·병합)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실확인결과에 대한 조치) ①담당 팀장은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후 민원인의 고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  - ②담당 팀장은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 게 재발방지 주의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 - 1.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경미하고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체시정조치하는 경우
  - 2.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단순 1회에 그치고 피신청인의 조치를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해결되는 등 법령 위반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
  - 3.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  - ③담당 팀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사실확인결과보고서 및 관련 입증 자료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한다.<신설 2016. 7. 21>
  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방지 주의조치를 권고받은 피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 재차 접수되어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16조(사실확인의 종결)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종결할 수 있다.
  - 1.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

- 2.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법률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
- 3.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- 4.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5. 동일 민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
- 6.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경우
- 7.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민원처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<개정 2016. 7. 21>
- 8.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<신설 2016. 7. 21>
- 제17조(처리결과의 통보 등) ①처리 담당자는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통보는 문서나 전화·전신·모사전송·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 - ②민원처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.
- 제18조(사실확인 및 처리의 기준)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  - 1. 침해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확인 및 사건에 관련된 자료의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한다.
  - 2. 민원의 처리는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및 민원인의 고충해결을 원칙으로 하고, 민원인·피신청인의 과실 유·무 정도,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.
- 제19조(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) ①담당 팀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(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. ②담당 팀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신고의 처리 <신설 2016. 7. 21>

**제20조(신고의 처리)**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. [본조신설 2016. 7. 21.]

#### 제5장 민원 등의 처리결과 관리 <개정 2016. 7. 21>

제21조(보존기간) ①민원 등의 관련 자료(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

- 여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되는 자료를 포함한다)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 7. 21>
- 1. 접수대장 : 3년
- 2. 상담기록 : 1년
- 3.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: 1년
- ②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.
- 제22조(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) ①민원처리부서는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·자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
  - 1. 제출 또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을 진행한 결과 피신청인의 위법 사실 없음이 입증되는 등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의 목적이 달성된 때
  - 2.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
 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 또는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폐기(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)하거나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(종이 출력의 경우)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## 제6장 보칙

- 제23조(민원인 등의 정보보호)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과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특별히 민원인 등을 보호해야한다고 판단되는 민원 등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민원인 등의 성명 등을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③진흥원은 민원 등과 관련한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정보이용에 대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 등의 처리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- 제24조(비밀유지 의무 등) ①민원처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 경과, 처리결과내용 기타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6. 7. 21>
  - ②민원처리담당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잘못된 처리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) ①진흥원은 민원 등의 잘못된 처리에 대해 교통비 또는 워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

- 가 민원인 등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제1항에 의한 보상 절차는 관련 민원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후 담당 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내부 지급신청절차에 의한다.

[전문개정 2016. 7. 21.]

- 제26조(교육 등)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등의 처리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7. 21>
- 제26조의2(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및 회신) ①민원처리총괄부서의 장은 민원 등의 내용 중 정책 및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선여부 또는 개선 계획 등 처리의견을 [별지] 처리의견서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.
  - ③원장은 정책 또는 업무개선 우수 처리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 08. 04.]

- 제27조(기준의 제정)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개정 2016. 7. 21>
- 제28조(처리 업무 관련 협의) 민원 등의 처리 업무와 관련한 웹사이트나 시스템 구축 등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민원처리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7. 21>
- **제29조(권한의 위임)** 민원 등의 처리 업무와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[별표]와 같다.<개정 2016. 7. 21>

## 부 칙<2010. 6. 7.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<2013. 8. 21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6. 7. 21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8. 4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5. 24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2. 26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6. 5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민원 등의 처리 업무와 관련한 위임전결사항

이이되거네는		전결권지	0171		
위 임 전 결 사 항	팀장	단장	실 · 본부장	원장	비고
1) 기준 등의 제·개정					
○ 현장검사 업무 기준의 제정		0			
○ 민원 등의 처리 상세 매뉴얼 제정		0			
○ 기타 업무 관련 세칙·매뉴얼 제정		0			
2) 민원 등의 이첩 또는 이송	0				
3) 상담 표준 답변 정비	0				
4)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 검사	0				
○ 접수사실 및 자료제출 요청	0				
○ 현장검사 통보	0				
○ 검사결과 통보	0				
5) 처리기한의 연장	0				
6) 사실확인 결과 통보	0				
7) 청와대, 감사원 등 외부기관 이첩민원의 처리		0			
8) 민원 등의 처리기준		0			
9) 수사의뢰	0				
10) 민원 등의 관련 사항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	0				
11) 민원 등의 처리 이의제기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	0				

# 정책 및 업무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서

□ .	요청사	항						
o ç	일련번호	:						
o 2	소관부서	:						
0 3	요청내용	- :						
	<u>.</u>	위 요청에	대한	업무	개선의견을	· 회신주시기	바랍니다.	
; 	처리의	견						